

8. 화재예방 관리기준

표준번호 : KMS-안-0202
 개정일자 : 2022.02.17.
 개정번호 : 8
 페이지 : 68 / 79

종 류	정의	설치기준	비 고
③ 비상 경보 장치	화재발생 시 주변의 작업자에게 화재사실 을 알릴 수 있는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면적 4백㎡ 이상 또는 해당층의 바닥 면적이 150㎡ 이상인 지하층·무창층 지하층, 밀폐공간 내부 <p>※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방송설비 설치 시 면제</p>	
④ 간이 피난 유도선	화재 발생시 피난구 (출입구) 방향을 안내 할 수 있는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바닥면적이 150㎡ 이상인 지하층·무창층 지하층, 밀폐공간 내부 유도선, 유도등은 바닥에서 1M 이하로 설치 <p>※ 유도등, 비상조명등, 피난유도선 설치 시 면제</p>	

4. 화재감시자

4.1 현장은 아래의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.

- (1) 연면적 15,000㎡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
- (2)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냉동·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

4.2 화재감시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고 안전보건관리자와 겹칠 수 없다.

- (1) 화재위험작업장소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불티비산방지포 등을 활용하여 발화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.
- (2) 화재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성능의 소화설비 비치 및 사용방법 숙지
- (3) 비상경보 장치, 소화설비, 안내장치 등의 성능 유지 및 점검
- (4) 작업 중 관계자 외 접근금지 조치 및 작업완료 후 잔여 불티 등의 확인
- (5) 위험작업 허가서의 작업구역 내 게시
- (6)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 유도

4.3 현장은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,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.

4.4 현장 안전관리자는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에 대한 자료를 기록, 보존해야 한다.

5. 화재예방관리

- 5.1 현장은 용접, 용단, 금속의 절단작업 등 불티비산 발생 시 차단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반경 내 각종 기기와 전선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- 5.2 현장은 화기취급 작업장 주변 또는 화재위험작업 주변의 인화성,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격리조치 해야 하며, 적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.
- 5.3 가스, 유류 등 폭발성, 인화성 물질 등을 반드시 현장소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지정된 장소에 저장소 등을 설치하여 보관·관리하고 가급적 당일 사용량 이상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위험경고표지, 소화기, 물질안전보건표지,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5.4 협력업체 사무실 등 가설건물 설치 시 안전관리자는 전기배선 상태, 소화기 설치여부 등의 방화진단을 실시해야 한다.
- 5.5 현장소장은 모든 난방기구에 대하여 설치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적정규격이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모두 폐기 및 반출조치 한다.
- 5.6 현장 내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,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화재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흡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떨이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한 경우에 한해서는 흡연을 허용한다.
- 5.7 현장 내에서는 사전 허가사항 외에 현장소장의 허가 없이 무단 소각이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된다.

6. 현장 사무실, 숙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관리

6.1 용어의 구분

- (1) '냉난방기' 라 함은 실내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장치로서 공용 및 개인 냉난방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전기식 냉난방기구와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는 비전기식 난방기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.
- (2) '전열기' 라 함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 열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장치로서 다리미 등 생활 가전, 전기식 난방장치, 전기밥솥, 전기그릴 등의 취사용 가전 등이 모두 포함된다.

6.2 냉난방기 및 전열기 사용 기준

- (1) 냉난방기구 및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, 감전,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
가. 적정 실내온도의 기준(권고) 및 유지

8. 화재예방 관리기준

표준번호 : KMS-안-0202
 개정일자 : 2022.02.17.
 개정번호 : 8
 폐이지 : 70 / 79

구 분	정부 기준 ^{주)}		당사 기준		비 고
	축서기	축한기	축서기	축한기	
사무실/숙소	28°C 이상	18°C 이하	정부기준 -2°C 완화	정부기준 +2°C 완화	축서기 : 7 ~ 8월 축한기 : 12 ~ 2월
창고/화장실	-	-	-	동파예방 조치	

주) 정부기준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’

나. 현장소장은 위 ‘가’ 호에 따라 냉방장치 가동시 평균 26°C 이상, 난방장치 가동시 평균 20°C 이하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 할 수 있다.

- ① 사무실 및 숙소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이용할 경우, 각 실의 독립적 온도설정이 곤란한 경우(중앙 집중식 냉난방)
- ② 사무실의 노후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경우
- ③ 휴게실, 사무실 내 창고 등 직원이용이 거의 없는 실내
- ④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온도 유지가 곤란한 경우

다. 현장소장은 위 ‘가’ 및 ‘나’ 호에 따라 사무실 등의 적정온도가 공용 냉난방기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, 개인 냉난방기 및 전열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현장소장이 승인 하여 사용 할 수 있다.

- ① 임산부, 장애인, 냉난방기 미설치 지역 근무자
- ② 개인질병에 의한 냉난방기 및 전열기 필요자 (진단서, 의사 소견서 등의 확인)
- ③ 위 ‘나’ 호의 ① ~ ④ 해당하여 개인 냉난방기 및 전열기가 필요한 자
- ④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개인 냉난방기 및 전열기가 필요한 경우

6.3 냉난방기 및 전열기 관리기준

- (1) 인증마크(KS, Q, KC)가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숙소, 직원식당 등의 기름보일러를 제외한 석유난로, 연탄난로, 등유 열풍기 등의 비전기식 난방기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.
- (3) 비전기식 난방기구의 연료보충 시 가열상태 또는 작동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.
- (4) 비전기식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증가, 산소농도 저하 등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환기하여야 한다.
- (5) 난방기구 및 전열기 주변 1m 내에는 유류 등의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, 주위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(6) 사무실, 숙소 등의 출입구와 난방기 및 전열기 주변에 소화기 등의 소화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한다.
- (7) 난방기구와 전열기는 항상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한다.
- (8)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(9) 미사용 냉난방기 및 전열기는 항상 전원을 차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10)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이용하여 세탁물 등을 건조하여서는 안 된다.

8. 화재예방 관리기준

표준번호 : KMS-안-0202
개정일자 : 2022.02.17.
개정번호 : 8
폐이지 : 71 / 79

- (11) 전열기구의 복사열과 전기매트나 온수매트 등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저온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온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매트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달지 않도록 그 위에 이불 등을 깔아 주어야 한다.
- (12) 온수매트나 전기매트는 말아서 보관하고 그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거나 접어서 보관할 경우 단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- (13) 사용하는 냉난방기 및 전열기의 작동상태, 피복손상이나 누유, 콘센트의 먼지 등 전반적인 화재위험에 대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(14) 사무실, 숙소 등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 및 전열기구의 점검 및 유지관리는 현장 관리업무담당자 또는 대행자가 주관하여 실시한다.